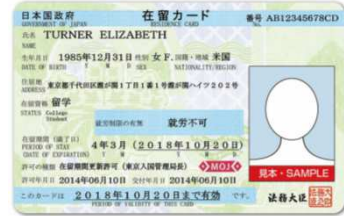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2012년 7월 9일(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 = 중장기 체류자》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대상이 되는 분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의 체류자격을 갖고 일본에 중장기간 동안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중장기 체류자’)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 ① ‘3개월’ 이하의 체류기간이 결정된 분
- ② 체류자격이 ‘단기체류’로 결정된 분
- ③ 체류자격이 ‘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분
- ④ 체류자격이 ‘특정 활동’으로 결정된,
East Asia Relations Commission의 일본 사무소 혹은
주일 팔레스타인 총대표부의 직원 또는 가족
- ⑤ 특별 영주자
- ⑥ 체류자격이 없는 분



체류카드

○ 중장기 체류자 분께는 상륙허가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에 수반하여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

○ 새로운 체류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만,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외국인등록 증명서는 일정 기간 동안 ‘체류카드’로 간주됩니다.

【외국인등록 증명서가 ‘체류카드’로 간주되는 기간】

영주자	16세 이상인 분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까지
	16세 미만인 분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특정 활동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별표1의 5 아래쪽 d항에 열거하는 활동은 제외)	16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그 밖의 체류자격	16세 이상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16세 미만인 분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16세 생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 ‘간주 재입국 허가’ 제도가 도입됩니다.

유효한 여권과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아래 ※ 참고)이 출국하실 때에 출국 후 1년이 경과되는 날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하는 날 중에서 빠른 날까지, 일본에서 출국하시기 전과 동일한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시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제도를 ‘간주 재입국 허가’라 부릅니다)
(※) 외교관 등도 대상이 됩니다.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실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출국하실 때는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한다는 것을 재입국·출국 기록(ED카드)의 정해진 란에 기재하고, 출국심사 시에 여권과 동 출국 기록과 함께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②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신 분은 출국 후 1년이 경과하는 날 또는 체류기간이 만료하는 날 중에서 빠른 날까지 재입국하지 않으면 체류자격이 상실됩니다.
- ③ 간주 재입국 허가로 출국하신 분은 그 유효기간을 해외에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넘게 출국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분은 간주 재입국 허가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체류자격 취소 수속 중인 자
- 출국 확인 유보 대상자
- 수용 명령서를 발부받은 자
- 난민 인정 신청 중이며 ‘특정 활동’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자
- 일본국의 이익 또는 공안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출입국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재입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무대신이 인정하는 자

법무성 입국관리국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immi-moj.go.jp/newimmiact_1/ko/index.html



○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거주지를 정했을 때 또는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시구청촌에서의 수속

새로 거주지를 정한 날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해당 거주지의 시구청촌에 체류카드를 제시하시고(아래 ※ 참고) 거주지 신고를 해주십시오.

(※) 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입국하실 때 여권의 상륙허가 도장 부근에 '체류카드 추후 교부'라고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를 받은 분은 체류카드 대신에 해당 여권을 제시하시고 거주지 신고를 해주십시오.

(※) 2012년 7월 9일 이후에는 주민표가 작성되어 있는 외국인이 다른 시정촌으로 전출하실 경우, 주민기본대장법의 규정에 따라 전출 전에

성명, 국적·지역 등이 변경되었을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결혼을 하여 국적·지역이 변경되거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안에 여권, 사진, 체류카드 및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어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참고) 신고 대상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사진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체류카드를 분실하거나 심하게 더러워졌을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체류카드를 분실, 도난, 멸실하거나 심하게 더러워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재교부 신청을 해주십시오.

(참고) 체류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멸실 등으로 인해 소지하고 계시던 체류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유실신고 수리 증명서나 도난신고 수리 증명서,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신고 증명서 등의 소명 자료를 신청 시에 함께 지참하여 주십시오.

체류자격에 의거한 활동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을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체류자격 변경신청이나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신청을 하실 때는 여권, 사진, 체류카드 및 소정의 자료를 지참하시어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체류자격에 따라 다음의 신청·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자격이 '영주자', 16세 미만인 분》【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체류자격이 '영주자'인 분 또는 16세 미만으로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까지로 되어 있는 분은,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여권, 사진 및 체류카드를 지참하시어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체류카드 유효기간 갱신신청을 해주십시오.

※영주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부터, 16세 미만으로서 체류카드의 유효기간이 16세 생일로 되어 있는 분은 16세 생일의 6개월 전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로자격(일부 제외), 유학생 및 연수생》【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나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은,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 '교수, 투자·경영, 법률·회계사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 내 전근, 흥행(일본의 공적·사적 기관과 맺은 계약에 의거하여 해당 체류자격에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기능, 기능실습, 유학 및 연수'의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신 분은, 본인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나 교육기관 등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회사 도산 등, 고용계약 등의 종료, 새로운 고용계약 등의 체결 등과 같은 이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 직접 나오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직접 신고하실 때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송을 통해 신고하실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체류카드 사본도 동봉하여 주십시오.

《배우자로서 체류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신 분》【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의 수속】

○ 2012년 7월 9일 이후에 상륙허가나 체류기간 갱신허가 등을 받은,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 '가족체류', '특정 활동(다. 항목)', '일본인의 배우자 등' 및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자격을 갖고 체류하고 계신 분은 해당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신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안에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 직접 나오시거나 도쿄 입국관리국에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법무대신에게 신고하여 주십시오.

○ 지방 입국관리 관서에서 다음의 신고 대상자가 각각 신고를 하실 때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하여 주십시오.

외국인 체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평일 8:30 ~ 17:15)

Tel 0570-013904 (IP전화·PHS·해외에서 거실 때는 03-5796-7112)

○ 주민기본대장법에 정하는 전입신고·전출신고는 인근 시구청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